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희결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0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4년 11월 17일

발 의 자 : 김희결 의원

찬 성 자 : 성백진, 김태수, 유동균, 김상훈,
박기열, 김영한, 김생환, 오승록,
장우윤, 장인홍, 남창진, 박준희,
이현찬, 김인제, 이승로, 강구덕
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며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하고 “「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」”를 “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”으로 하며 “적합하도록”을 “맞도록”으로 하고 “비치”를 “보관”으로 함. (안 제9조, 제10조,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

다. 기 타 :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중 “국토해양부장관이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이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중 “「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」”를 “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중 “적합하도록”을 “맞도록”으로 하고 “비치하여야”를 “보관하여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등)</p> <p>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에 포함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하여 <u>국토해양부장관이</u> 고시하는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·징수한다.</p>	<p>제9조(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등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<u>국토교통부장관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하고, 예산·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<u>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 규칙</u>」을 준용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</u> ----- -----.</p>
<p>제11조(운영규정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알려진 기준에 <u>적합하도록</u>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<u>비치하여야</u> 한다.</p>	<p>제11조(운영규정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맞도록</u> ----- ----- <u>보관하여야</u> -----.</p>